

| | | | | |
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호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| | | | |
| 소유자 | 성명(명칭) | |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 | |
| | 주소 | | | |
| 건설기계 | 등록번호 | | 연식 | |
| | 기종 | | 형식 | |
| | 차대번호 | | 원동기형식 | |
| 폐기인수연월일 | | 년 월 일 | | |
| 등록번호판 인수·폐기 여부 | | [] ()개 인수·폐기하였음 | | [] 인수하지 않았음 |
|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| | [] 직접신청 | | [] 폐기업자가 신청 |
|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| | | | |
| 년 월 일 | | | | |
| 검인란 | | | | |
| | | | | |
| <비고> | | | | |
| 1. 이 폐기인수증명서는 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며,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| | | | |
| 2.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하되,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. | | | | |
| 3.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| | | | |